

평창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8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11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제안이유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생활보호법폐지로 동조례의 “생활보호대상자” 를 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”로 명칭변경

주요골자

- 동조례 제2조②의1호 및 2호 “생활보호대상자” 를 “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” 로 명칭변경.

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별 첨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관계부처 승인 : 해당없음
- 입법예고 : 해당없음
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.

평창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1호 및 제2호중 “생활보호대상자” 를 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
<p>제2조(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) ②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자 : <u>생활보호대상자</u> 및 의료부조자,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중 중·고등학교 학생</p> <p>2.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 : <u>생활보호대상자</u> 및 의료부조자,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을 행한 중·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으로 학교장, 학장, 총장이 추천 한 자</p>	<p>제2조(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) ----- ----- --</p> <p>1. ----- : <u>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</u> ----- -----</p> <p>2. ----- : <u>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【 관계법령 발췌 】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대비

국민기초생활보장법	생활보호법
<p>제5조(수급권자의 범위)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.</p>	<p>제3조 (보호대상자의 범위) ①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업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정하는 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65세이상의 노쇠자 2. 18세미만의 아동 3. 임산부 4. 질병, 사고등의 결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5.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이들의 부양, 양육, 간병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 6.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자활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의 일부가 필요한 자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및 생활보호법의 폐지

국민기초생활보장법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제1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다른 법률의 폐지) 生活保護法은 이를 폐지한다.</p>